

(103)

### 全

卷八

## 원고지 주의 54

## 피고 살호건설주식회사

## 손 해 대 상 (기) 청 구 의 소

소송물가액      금 55,000,000 원정

월등인 지역 금 275,000 원정

송 달 료 수 금 42,000 원정

수원지방법원 귀중

三

卷八

원 고 벌지와 같은  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 
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 6 범전빌딩 210호, 313호  
TEL 031-223-1114 FAX 031-223-1115

피고 삼호건설주식회사  
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번지 3 마라톤빌딩 14층  
대표이사 김언석

## 수 해 떠 상 (기) 정 구 이 소

개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, 그 다음 날부터 환제일까지는 연 2월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 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  3. 위 제 1항은 가질 행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### 1. 당사자들의 관계

- 가. 원고들은 피고 삼호건설주식회사가 [REDACTED] 지상위에 주상복합식 건물인 [REDACTED] (이하, '이 사건 아파트'라고만 합니다.)에 관하여 [REDACTED] 경부터 [REDACTED] 경사이에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입니다. (다만 원고 36, 손영일은 최초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입니다.)
- 나. 피고 삼호건설주식회사(이하, '피고회사'라고만 합니다.)는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한 건설회사겸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.

### 2. 합의서 작성의 경위

- 가. 피고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[REDACTED] 모델하우스(분양사무실)내에서 [REDACTED] 와 함께 분양하였습니다. 당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측면 조형물과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주상복합식 건물이고, 건축자재 또한 최고급자재로 시공하는 아파트라고 설명하였습니다.
- 나. 그래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벽산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하는 최고급 주상복합식 건물이라는 피고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서 같은 시기에 인근에서 분양하던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보다 훨씬 높은 평당 2,700,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.
- 다. 그런데, 원고들이 1994. 4.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예초에 피고회사에서 분양계약 당시에 약속한 것과는 달리 건축구조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질 자재를 사용하는 등 많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즉, ① 주차공간의 부족 ② 6층 휴게공간내에 대형 클링타워와 물탱크 설치 ③ 노인정 및 휴식공간 미설치 ④ 6층 6세대 차면보다 30cm 아래 시공 ⑤ 가스배관 노출 ⑥ 엘리베이터 사용상의 문제 ⑦ 거실 샤시, 각 방문 샤시 3개 및 세면기, 변기문제 ⑧ 용도변경 ⑨ 기타 하자문제등 많은 문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.
- 라. 이에 원고들은 입주자들은 피고회사에게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, 결국 1994. 12. 2. 경 입주자들의 대표인 이영일과 피고회사 사이에 위 각종의 하자에 대하여 14개 항목에 달하는 합의를 하고 각제 1호증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.

### 3. 피고회사의 합의사항 불이행

- 가. 거실 및 방문샤시에 대하여

(1)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[REDACTED]

모델하우스에서 위 [REDACTED]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를 함께 분양하였는데,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위 [REDACTED]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보다도 2등급 정도 더 좋은 최고급 건축자재를 사용한다고 누누히 강조하였습니다.

그러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거실 및 방문샷시는 최하등급에 속하는 검정색 알미늄 샷시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. 이는 위 [REDACTED] 아파트의 거실 및 방문샷시보다도 재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같은 3호층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시기인 1994. 경 평당 220만원에 분양한 수원시 장안구 지동 소재 삼호아파트에 설치한 샷시보다도 재질이 떨어지는 샷시로 시공된 것입니다.

애초 약속한 대로 시공하였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및 방문샷시는 최소한 하이 샷시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피고회사는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.

(2) 이에 입주자들이 피고회사측에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자 피고회사측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입주자들의 주장을 모두 시인하면서 거실 및 방문 샷시를 모두 교체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.

그래서 위 합의서에 제 4항기재와 같은 합의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.

#### 나. 세면기 및 변기에 대하여

(1) 또한, 피고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보통 다른 회사에서 시공한 세면기와 변기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저급한 재질로 된 세면기 및 변기를 설치하였습니다.

이점에 대하여도 피고회사측은 입주자들의 지적을 받아 들였고 특히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일체형의 변기 및 세면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.

(2) 그러나 피고회사는 그후 변기의 투명을 교체하여 주었을 뿐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#### 다. 분양면적에 대하여

(1) 이 사건 아파트는 각각 56평형, 36평형, 33평형, 30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그런데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같은 평형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면적이 훨씬 비좁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회사측에 실제 분양면적을 정확하게 실측하고 부족한 평수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.

(2) 이에 피고회사측은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피고회사의 비용으로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면적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실측하도록 하고 그 면적 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. (위 합의서 제 9항)

그러나 피고회사측은 아직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분양면적을 측량하자는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면적을 다시 실측하고 그 면적부족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.

#### 4. 결론

따라서 피고회사는 1994. 2. 2. 자 합의에 따라 거실삿사, 각 방문  
사시 3개 와 세면기, 변기를 교체시공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고 할  
것입니다. 그러나 현재 피고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 
때문에 원고들은 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회사에게 각 금 1,000,000  
원을 일용 청구하고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도  
록 하겠습니다.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  
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시까지는 민법소정  
의 연 5푼의,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  
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 
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  
기에 이르렀습니다.

#### 입 중 방 법

갑제 1호증	합의서
갑제 2호증의 1	내용증명우편(95.7.5)
갑제 2호증의 2	내용증명우편(95.7.21)
갑제 2호증의 3	내용증명우편(95.9.13)
갑제 2호증의 4	내용증명우편(96.1.24)
갑제 2호증의 5	내용증명우편(96.3.14)
갑제 2호증의 6	내용증명우편(96.3.31)
갑제 3호증의 1 내지 16 각 사진	
기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.	

#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	각1통
1. 소장부본	1통
1. 법인등기부등본(삼호건설주식회사)	1통
1. 위임장	1통
1. 담당변호사 지정서	1통
1. 날부서	1통

1996. 5.

위 원고들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다산

담당 변호사 김 칠 즘

수원지방법원 기종